

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

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

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

1. 목 적

- 댐 건설로 인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화순군의 자원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댐 피해 보상 및 대책 수립을 해당 댐기관에 강력히 이행 촉구토록 조치하기 위하여,
- 댐 피해에 관련된 주민의 직·간접 피해 실태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,
- 댐 피해 관련 기관단체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화순군과 댐 피해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함.

2. 활동기간

- '97. 8. 1 ~ '97. 12. 31 (5개월간)

3. 대 상

-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주민

4. 조사방법

- 서류 및 현장조사

5. 조사반

- 위원장 : 이재규 위원장
- 간 사 : 김경남 위원
- 위 원 : 4 명

6. 활동결과

1. 댐 건설로 인한 화순군민의 정서

■ 각종댐 (동북댐, 주암댐, 대초댐) 건설로 인한,

- 소재지와 농경지가 소멸되어, 군민의 8%인 878가구 5,900명이 이동하고, 18.1 Km²인 4개면 17개리가 댐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,
- 동북댐의 경우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환경 보존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고,
- 주암댐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상관광이 연계된 대단위 주암호 권역 관광 개발계획을 암시하고, 『그림같은 호반 관광도시』 건설로 관광 개발에 의한 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갖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 하였음.

■ 댐 건설 이후

- 해당 기관에서는 댐 운영관리 상류 지역인 지역 주민에 대한 약속과 기대와 정서를 무시하고 광주광역시를 위시한 수혜지역 위주로 운영 하였으며,
- 이로인해 댐 건설이전 아름답던 이서적벽과 동북천 경관이 수장되어 관광 자원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음.
- 댐 건설이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 화순군민의 정서는 속았다는 심한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갖가지 피해 사례로 지친 상태임.

2.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공통적 피해사례

- 국가적으로 댐건설로 인하여,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상당한 피해만 보고 있는 지역도 있음.
이는 오늘날 정책 결정에서 공평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.
- 특히 댐 건설로 인하여 댐 주변 지역이 부담하고 있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시간과 경비의 문제도 있으며,
- 지역의 피해가 댐의 영향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음 (예 : 농업, 의학적 피해등)

가. 인구의 급격한 감소

- 수물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라는 직접적인 감소와
- 댐 주변 지역에서의 생활 불편과 경제 활동의 제한등에 의한 간접적인 감소

나. 토지등의 경제자원 상당량 수몰

- 지역 총생산량과 농가소득의 감소로
- 지역 경제력의 약화 가속화

다. 지방 행정기관의 조세 수입 감소와 과다 비용발생

- 인구감소와 자원수몰로 조세 수입감소(나타나지 않는 경기 침체 더욱 큼)
- 수질보전(하수종말처리장, 간이 오수처리장등) 관리등 기타 비용과다 발생 예상
- 댐 주변 지역개발과 관련한 집단민원 발생 해결을 위한 예산 지출

라. 지역개발의 제한

- 국가적 차원에서 상수원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고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,
- 지역개발 낙후 및 지역주민 재산 손실에 대한 조치 미흡

마. 생활에 대한 불편

- 안개일수 또는 안개 지속 시간 증대로 주민건강피해 초래
- 이설도로 폭 협소 및 심한 굴곡도로로 대형 교통사고 위험

바. 댐 건설 이후 끊임없는 민원 발생

- 자산의 실질적 가치 하락으로 재산 손실초래
- 동북천 건천화 현상에 따른 생태계 파괴
- 이서면. 남면 5일시장 기능 상실과 지역경제 침체
- 이서적벽과 김삿갓 유적지 수장
-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사업비 지원 지연
- 저수구역 확대로 제내지 과다 발생
-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직·간접 피해보상 요구

3. 댐 주변 지역의 피해에 대한 개선사항

가. 지역개발세 시·군세 전환

○ 문제점

1) 법 제정 취지에 역행

- 지역개발세는 사용자 부담금적 성격과 사회적 공유자원 사용자에게 대한 보상금 또는 보전적 성격을 지녔고,
- 특수 부존 자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광역 자치단체세(도세)로 과세권이 도에 주어지고 단지 기초 자치단체는

30%의 징수 교부금만 겨우 받고 있음.

○ 개선점

- 현행 지역개발세는 지역 특성이 매우 강한 발전용수, 지하자원, 지하수, 콘테이너등에 대한 조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현행 도세의 목적세에서 시·군 목적세로 세원이 전환되어야 하고,
- 댐 용수중 현재 과세하고 있는 발전 용수이외의 과세에서 제외되는 생활용수, 공업용수, 농업용수등 광주 광역시와 수자원 공사 및 영산강 농조가 유료로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담수면적에 비례하여 안분 과세토록 조정되어야 함.
- 현행 지역개발세법 규정상 발전 용수를 제외한 댐 용수는 과세대상에서 비과세 처리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와 수자원 공사는 자치단체에 용수를 공급시 생활용수 1톤당 광주광역시 38원 25전, 수자원공사 생활용수는 톤당 133원, 원수는 톤당 78원씩 징구하고 있음.
- 발전용수의 세율도 타세목과 비교시 지나치게 낮을 뿐 아니라 댐 건설로 비롯되는 세수입의 감소, 환경오염 과증,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 경제행위 위축등의 감수를 고려한 세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
- 발전용수에 대한 현행 세율인 톤당 10원에서 최소 100원으로 하고,
- 생활, 공업, 농업용수등을 광주광역시나 수자원 공사, 영산강 농조가 자치단체등에 유료로 공급하는 모든 용수도 발전용수에 상응하는 톤당 100원으로 과세 하여야 함.

나. 환경 위생시설 운영에 따른 지자체 운영비 과중

○ 문제점

-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 봉사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 하여야 할 일은 무수히 산적해 있으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인데,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댐 수질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중앙정부 70% 지방자치단체 30% 비율로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, 시설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도 막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도 부당함.

○ 개선방안

- 담수 구역내 수질보전을 위하여 운영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혜주민의 식수원인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와 운영비는 정부 70% 수혜지역 30% 비율로 부담 하여야 할것임.

다. 상수원 취수에 따른 원수대 (물값) 요구 불합리

○ 현황

- 댐 건설로 인하여 이루 말할수 없는 지역개발의 낙후와 주민생활의 불편이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,
- 수혜 주민의 맑은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광주광역시는 상수도 원수 공급계약서에 의해서 수자원 공사에서는 특정 다목적댐 시행령 제11조의 2와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댐 담수 구역내 수몰민의 식수원에 대해서도 원수대금을 징수 하고 있음.

구 분	기 간	사 용 량	금 액
계		58,310,845 톤	1,987,881 천원
동북댐	77년 ~ 97년말	54,919,523 톤	1,562,185 천원
주암댐	96년 5월 ~ 97년말	3,391,322 톤	425,696 천원

○ 문제점

- 댐 건설전 기득하천 사용자로서 얼마든지 물이용에 문제가 없었음으로 원인 제공자인 댐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물값 요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.

○ 개선방안으로

- 댐이 건설되지 않았을 때 사용료 없이 물을 사용하던 기득권을 인정하여 무상 취수토록 조치

라. 제내지 및 간접보상토지 지방자치단체 환원과 저수구역내 유휴지 관리권 이양

○ 현황

- 과도한 담수구역 지정으로 담수가 되지 않는 제내지 및 간접 보상토지가 방치되고 있어 뺨과 잡초로 황폐하여 주변 미관을 크게 흐리게 하고 있으며,
- 특히 저수구역내 유휴지 관리에 있어 농경목적 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경이외 목적 점용 및 하천 골재 관리는 해당 댐 기관에서 직접관리 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문제점

- 댐 주변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뺨 형태로 남아 주변지역이 삭막하여 주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이용의 비현실성과
- 해당 댐 기관의 보상지역은 해당댐 기관에서 수몰되는 토지를 매입 보상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 잠재

○ 개선방안

-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댐 담수구역에 대한 인식으로,
 - 댐 담수 구역의 토지자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담수 이용원은 해당댐 기관이 갖되,
 - 소유권 및 관리권 그리고 댐전역(수면포함)의 이용권은 지방 자치단체에 전환 되어야 함.

마. 댐 주변 지역 지원금 현실화

○ 현황

- 댐 건설이후에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소득원의 상실, 지역생활 환경의 악화를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
-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한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.
- 특히 댐 및 상수원 보호지역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에 의거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는 하나 지역의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지역개발의 보상차원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.

○ 문제점

- 댐 주변 지역의 주민을 위한 지원금이 영세하여 농림수산업, 상공업 관광등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위한 지원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,
 - 주암댐 주변지역인 남면에 마을회관 신축비와 장학금 지급이 고작임.
 - 주암댐 96년 - 30,304 천원
 - 97년 - 20,100 천원
 - 계 - 50,404 천원
- ※ 동북댐, 대초댐 지원실적 없음.

○ 개선방향

- 댐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감소등을 감안할 때 관계법 개정 (특정 다목적댐, 수도법, 상호협약서)에 의한 지원금이 현실화 되어야 함.